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서울 행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7002 취득세 서울 정정
원 고 A
피 고 ○○특별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4,988,490원, 농어촌특별세 5,999,340원, 지방교육세 8,999,0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 E(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망 F와 망 G의 자녀들로, 망 F는 2002. 12. 12., 망 G은 2014. 7. 31. 각 사망하였고, H은 망 F(이하 '망인'이



라 한다)의 여동생으로 원고 등의 고모이다.

나. ○○ ○○구 I 임야 18,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23. H 앞으로 1978.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당시 매매대금은 망인이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4438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7. 7. 망인과 H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망인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망인과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서 그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수탁자인 H은 명의신탁자인 망인에게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원고 등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H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592호로 항소하여 2022. 4. 29. 'H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6. 16. 명의신탁해지(또는 부당이득반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2. 5. 18.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6. 16.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22.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거래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한 취득세 104,988,490원, 농어촌특별세 5,999,340원, 지방교육세 8,999,0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5. 29.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이 사망한 2002. 12. 1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6.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23. 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거래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H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상속받아 H과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① 명의신탁자인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단지 명의신탁자인 망인에게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② 원고 등과 망인 사이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포괄적 승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H과 사이에서는 망인이나 원고 등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법률관계만이 발생하는 점, ③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곧바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과 사이에서 대가없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임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끝.